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70 발의연월일: 2023. 2. 2.

발 의 자:고용진・임호선・김두관

정태호・강득구・김승남

김수흥 · 김태년 · 신정훈

한병도 ·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른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·임대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 세를 중과하게 되면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무 관하게 가장 낮은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단체(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"을 "단체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(생 략)	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	②
인으로 보는 <u>단체(「공공주택</u>	<u>단체인</u>
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	
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	
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<u>경우는 제외한다)인</u> 경우 제1	
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	
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	
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	
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. <u><단</u>	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
	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
	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
	준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
	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
	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